

문서번호	서울장학재단-283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8.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제 19 호

담 당	부 장	사무국장	이사장
조혜민		송연숙	대결 송연숙
협조자			

I·SEOUL·U



2018 행정정보공개 운영계획

2018. 4.

서울장학재단

서울장학재단 2018 정보공개 확대 계획

서울장학재단에서 직무상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시민이 청구·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장학 사업 및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시장방침-234호, '12.7.6. 및 행정1부시장방침-620호, '12.12.6.)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 실행 계획 수립 요청(정보공개정책과-4321, '12.12.12.)
-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자료 제출 요청(정보공개정책과-5886, '18.3.16.)

II 추진 방향

전략 목표	서울 시민이 재단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추진 전략	정보공개 처리의 효율성 강화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실행 과제	홈페이지 메뉴 개선	정보공개청구 체계 강화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생산문서 공개 운영기반 구축	직원 교육 실시
성과 목표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	정보공개청구	공개 시스템화	정보공개교육	
	7항목 28업무 > 7항목 32업무	7일 이내 처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공개 연계	연 2회 실시	

1 정보공개 처리의 효율성 강화

□ 홈페이지 메뉴 개선

- 추진 일정: 2018년 4월
- 목적: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온라인 사용자 접근 편의 제고
- 주요 내용
 - 홈페이지 화면 디자인 개선
 - 사전정보공표 유형별 범주 개편

□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

○ 연도별 목표

구분	2018년	2019년
목표	7항목 32업무	8항목 34업무

※ 2017년 실적: 7항목 28업무

※ 2018년 사전정보공표 현황(3월말 현재) 붙임 1 참조

○ '18년 사전정보공표 확대 내역(신규 메뉴 개설)

항목	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비고
대내외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연1회	2월	홈페이지	개설완료 (2018.02.)
경영정보	정보공개청구 통계	월1회	매월 말	홈페이지	
	공공구매 실적	월1회	매월 말	홈페이지	
주요업무	장학사업 회의결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처리 체계 강화

○ 정보공개청구 추이

- 최근 4년간('14~'17) 정보공개청구 건수 및 처리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 중)	기타 (취하· 부존재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총 계	86	70	70	0	0	0	16
2014년	13	12	12	0	0	0	1
2015년	19	16	16	0	0	0	3
2016년	27	22	22	0	0	0	5
2017년	27	20	20	0	0	0	7

- 최근 4년간('14~'17)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구 분	총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평균
총 계	69	35	16	8	5	5	0	0	2.78
2014년	12	5	2	3	1	1	0	0	3.58
2015년	16	5	5	3	1	2	0	0	3.87
2016년	21	13	6	1	1	0	0	0	2.04
2017년	20	12	3	1	2	2	0	0	3

○ 정보공개청구 신속한 처리

- 정보공개청구 접수당일 즉시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

-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를 적극 안내하여 처리기한 준수 강화

※ 청구결정 법정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 노력 평가지표 스피드 지수 반영(20점)

스피드지수=(총 법정처리기간-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총 법정처리기간*100

- 오프라인 청구 시 처리 통지서 표준 양식 활용 철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준양식(붙임3~17)

• 결정기간 연장 시 연장사실 및 사유 즉시 통지

○ 정보공개 청구 및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방법: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접수,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등 • 기재사항: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따라 청구(별지1호)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내용 기록 - 소관 담당자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된 정보의 검토 - 공개여부 결정 - 처리기간: 10일 이내(법정처리기한)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청구인과 상의 후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사유 및 법적근거 및 불복절차 명시 이의 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공개실시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확인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확인 - 비용부담 • 내용: 수수료(붙임2참조)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라 다름 (행안부 시스템 이용 시, 재단에 직접 청구 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계획(안)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 구성 인원: 5명
 - 내부위원 2명, 외부전문위원 3인 구성
 -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2013년~2017년 공개청구건(116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 심의안건 발생 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하여 운영 예정.

※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② 심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안)

- 정보공개 결정시 비공개 최소화, 적극적 공개 원칙 공유
- 정보 생산자의 공개 여부 1차 심의 후 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 확정
-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및 이의신청 시 개최
-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문 및 현황 보고 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예산

- 서울장학재단운영>사무국운영>경상운영비>회의운영비>정보공개심의회 회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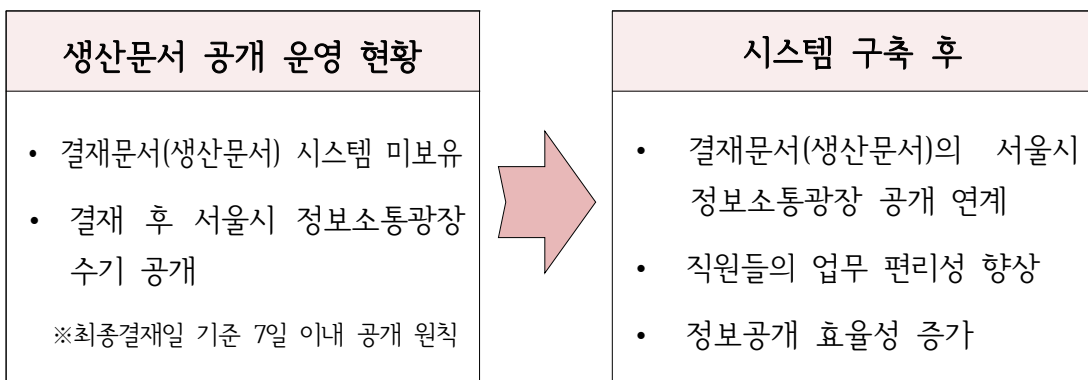
예 산	산출내역
600,000원	100,000원x3명x2회

2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 생산문서 공개 운영기반 구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생산문서 공개 시스템화

- 추진 일정: 2018년 10월(추진 예정)
- 추진 담당: 정보화 사업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 추진 내용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교육 일정: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연2회)

○ 교육 대상: 전 직원(총10명)

○ 교육 내용

-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 정보공개 업무 절차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이용 방법
- 사전정보공표
- 원문정보공개 교육
- 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세부 평가지표 안내

※ 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 노력 평가지표에 교육내용 반영(8점)

IV

기대 효과

- 사전정보공표 확대에 따라 재단의 행정 투명성 제고
- 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및 경영평가 등 외부정책에 효과적 대응

- 붙임
1. 2018년 사전정보공표 현황(3월말 현재)
 2. [별표] 수수료 1부.
 3.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1부.
 4.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1부.
 5. 정보공개처리대장 1부.
 6.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1부.
 7.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부.
 8.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9. 제3자 의견 청취서 1부.
 10. 정보 결정 통지서 1부.
 11. 정보공개 위임장 1부.
 12.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1부.
 13.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
 14.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1부.
 15. 이의신청 처리대장 1부.
 16.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부.
 17. 정보공개 운영실태 1부. 끝.